

희망저축계좌 II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-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♣ 지원예시

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 20만원 ⇒ 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 추가지원금*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 기준
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	7인가구
가입기준 (소득상한)*	972,406	1,630,043	2,097,351	2,560,540	3,012,258	3,453,502	3,890,296
유지기준 (소득상한)**	4,194,701	4,194,701	4,194,701	5,121,080	6,024,515	6,907,004	7,780,592

* 가입기준: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하

** 유지기준: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% 이하

□ 용도증빙

- 증빙서류 요청은 만기 전 용인지역자활센터(☎ 031-8005-8040)에서 서류 제출 일정 공지 예정
- 가입 시점 이후부터 만기시점까지 해당용도에 사용한 것만 인정

□ 용도증빙 예시(전기세, 관리비, 통신비 등 일반 생활비로는 사용불가)

- ① 주택구입 및 임대
- ② 본인·자녀의 고등교육·기술훈련
- ③ 사업의 창업·운영자금
- ④ 의료비(미용목적 제외)
- ⑤ 국민연금·고용보험·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납입
- ⑥ 결혼자금 등

※ 사용용도 증빙은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% 이상을 증빙해야 함

□ 해지요건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	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사례관리(연2회/총6회) +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
	중도	-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초과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사례관리(연2회/총6회) + 사용용도 증빙 50% 이상 완료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- 생계·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	
환수해지	만기	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및 사례관리 이수 미달 시 - 사용용도 미증빙시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	중도	-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기준 미달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- 생계·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- 사용용도 미증빙	

□ 유의사항

- **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**
 - **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~현월 22일**(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)
-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'적립중지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본 기관으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**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**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**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**될 수 있습니다.

※ 한시적 업무처리 공지사항(~22년 7월)

- 시스템 개편으로 '22년 4월~6월 각종 지원금은 7월에 일괄 적립됩니다.
- 시스템 오픈한 후에 지급해지 신청, 적립중지 신청, 전출입 처리는 가능하며, **시스템 오픈 전에 본인통장 해지할 경우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**

※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-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(☎ 031-324-3049)
- 용인지역자활센터 통장사례관리 담당(☎ 031-8005-8040)